



아세안 데일리 정관

작성일 : 2021년 5월29 일

(재정)

아세안 데일리 정관

제1장 총 칙

1조. 명칭

본사는 아세안 데일리라 칭하고 ,신문사는 아세안데일리 뉴스 (영어: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Daily News) 영문 ASEAN Daily News라 하고 약자로 ADN 으로 표기 한다.

2조. 설립 목적

본사는, 아세안 지역별 지사를 중심으로 아세안 교민사회의 정보와 각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여 한인의 위상을 높이며, 모국과 아세안 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지위

아세안 각 지역별 신문사는 독립된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되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지역별 편집 권한을 부여받는다. 다만, 분기별 본사 편집국장회의를 거쳐 편집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결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4조. 소재

본사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서울에 두고 아세안 각도시 수도에 지사를 둔다.

제2장 조 직

5조. 권리와 의무

본사의 지역별 디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권리

- 본사의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 본사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 본사가 승인한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 할 수 있다.

나. 의무

- 본사의 정관 및 지시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 아세안 데일리의 편집 방향과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매일 2건 이상 자체 기사와 3건이상의 번역 기사를 인터넷상에 올려야 한다.
- 본사에 정관을 접수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 계획서와 임원 명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정관, 사업 계획 및 임원 명부 변경에 대해서는 본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6조. 임원 구성

본사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선임 임원은, 사장 1명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 임원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아래와 같이 임명한다.

부사장: 1명으로 한다.

편집국장: 1명으로 한다.

이사: 5명 이내로 한다.

사무국장: 1명은 사장이 임명한다

.

3. 고문

고문 : 본사 발전에 공헌한 바 있는 교민으로,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고문 : 임기를 완료한 전직 사장으로 한다.

7조. 임원의 직무

본사 각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회장: 본사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장: 본사의 경영을 담당한다
4. 편집국장: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사 제반 사무행정을 총괄한다.
5. 사무국장: 사장을 보좌하고 본 사 제반 사무행정을 총괄한다.
6. 이사: 본사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3회 이상 사유 없이 이사회 불참시 사장이 해임 할수있다.
7. 고문: 본사의 자문 역할을 한다.
8. 지사장: 각 지사를 대표하고, 지사의 사무 행정을 총괄하며, 본사의 정관과 지시사항을 엄수한다.

8조. 임원의 임기

가. 회장: 회장의 임기는 4년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회장의 임기는 본부에서 임명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

나. 임원: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하며, 그 교체는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의 취임까지 그 직무를 집행한다.

다. 고문: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임기는 해당 고문을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라. 지회장: 각 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9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아래 절차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아래의 모든 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한국 국적자
 - B. 본사의 활동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
 - C. 대한민국 및 제 3국에서 민, 형사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D. 총회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
- 2. 회장 입후보 등록은 총회 20일 전에 마쳐야 한다.
- 3. 회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 4. 단독 입후보일 경우, 성원된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의 절차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5. 회장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정한다.
- 6. 회장 선출은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치루어야 한다.
- 7. 인수인계는 차기 년도 회장 임기 전까지 완료한다.

제 4장 총회 및 이사회

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장은 본사의 회장이 겸임한다

11조. 대의원의 구성

- 1. 본회 가맹 각국 지사장
- 2. 6조에 정한 본회의 임원
- 3. 회장 선출 총회의 경우, 대의원 명부 구성 및 위임장 등록을 총회 9일 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후에는 변경 할 수 없다.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총회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일반 총회의 경우에는 총회 시작 전까지 대의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 4. 본회 대의원 등록을 마친 자라 할 지라도, 지사별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은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 5. 이사회및 정기총회에 3회 미참석시 이사직및 대의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12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 총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임원 임기 만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 총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또한, 대의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소집 통보

총회 소집 통보는 총회 소집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

- 1. 총회 성원: 재적 대의원(본사에 등록을 마치고 월회비를 납부한 지사장)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된다. 위임장 및 유무선 대면회의에 참석하는 이는 정족수에 대한 성원만 할 수 있고 투표권은 가질 수 없다.
- 2. 의결 정족수:의결 사항에 따라 다르다.
 - A. 회장선출: 다수 득표를 원칙으로 한다.
 - B. 정관 개정 승인: 성원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 C. 예산 및 결산 승인: 성원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 D. 사업 계획 승인: 성원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15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이사회:연4회 소집한다.
2. 임시 이사회: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16조. 이사회 소집 통보

이사회 소집 통보는 이사회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17조. 이사회 성원 및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 성원: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된다.
2. 의결 정족수:성원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8조. 이사회 의결 사항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수립
4. 정관의 수정 및 개정안 작성
5. 어떠한 사안(개인, 단체간)에 대해 분쟁과 관련된 서류가 접수 되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고문을 포함한 분쟁조정 위원회를 둔다.

제5장 재정 및 재산

19조. 재정의 총당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총당한다.

1. 가입비:최초 가입시 300만원
2. 월회비:각국지사 월 100만원
3. 광고 수익금
4. 찬조금:모금 및 기부금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익금

20조. 기금 조성

본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1조. 자금 집행

긴급 자금 집행 필요 시 회장의 승인으로 집행하나 추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에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 또는 결과가 나올 시 집행 부서와 회장이 피해보상을 한다.

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23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24조. 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2021년 5월 31일 재정 및 승인되었으며, 승인과 동시 시행한다.